



의안번호	제73호
------	------

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1. 5. 17.

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73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5. 17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에너지 개발·보급·확대,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에너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개정조례안 공포 후 추경에 반영 예정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03. 16. ~ 04. 06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

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에너지과(☎ 041-635-2931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(제23조 및 제24조) 보칙을 제8장(제24조 및 제25조)보칙으로 한다.

제7장(제2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

제23조(에너지센터 설립 등)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논산시 에너지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
2.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, 이용·보급사업,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
3.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·활용
4.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
5. 에너지 관련 국내·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
6.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, 교육·홍보지원 및 관리
7.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
8.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·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

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과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⑤ 센터의 조직·인력·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뉴딜경제과장	김 민 영
	그린뉴딜팀장	황 준 용
	담 당 자	신 익 호 (746-6024)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장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</p> <p>제23조(에너지센터 설립 등)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논산시 에너지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.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, 이용·보급사업,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.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·활용 4.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. 에너지 관련 국내·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.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, 교육·홍보지원 및 관리 7.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.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·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<p>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7장</u> 보칙</p> <p><u>제23조~제24조</u> (생략)</p>	<p><u>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과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」 에 따른다.</u></p> <p>⑤ <u>센터의 조직·인력·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8장</u> 보칙</p> <p><u>제24조~제25조</u> (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)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3조 (에너지센터 설립 등)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-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: 300,000천원(운영비 150,000천원, 사업비 150,000천원)

나. 추계결과 : 1,500,000천원(5년)

-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향후 5년간 1,50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자체수입(지방세 등)

3. 작성자

뉴딜경제과장 김 민 영

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시 비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세 출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○ 센터 운영비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○ 센터 사업비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재원 조달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지방세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에너지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진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.